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_____와 수탁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수탁자” 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늘리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_____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___년 ___월 ___일부터___년 ___월 ___일 까지로 한다.(신탁기간이 끝난 후 신탁재산 교부 가능일: _____년 ___월 ___일)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명한 후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 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 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의 수익자> 주소 :

성명 :

<신탁이익의 수익자> 주소 :

성명 :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명한 후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 ③ 위탁자가 제 1 항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별표 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 1 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주식에 운용할 경우 동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 ④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다 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⑤ 기업어음 또는 소액 회사채를 운용대상으로 하여 신탁계약의 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 경우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그 내용을 위탁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과 신탁재산간 만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만기 전 여유자금의 발생이 불가피한 때에는 예상 여유자금 발생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운용방안을 제 27 조 특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제 5 항에 따른 여유자금 발생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시한 운용방안에 따라 운용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시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기본보수는 제 19 조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 ⑦ 제 5 항과 제 6 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위탁자가 정기 자산운용내역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통지가 생략된 경우 위탁자의 이해에 반하여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증대되어 위탁자의 투자기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 ⑨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⑩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한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운용한다.
- ⑪ 위탁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신탁재산 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재무상태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2. 매 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무상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른 위탁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변경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제8조 제2항의 통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재무상태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이 운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 5 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1 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운용내역 통지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 제 4-93조 제 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 8 조 제 1 항 및 제 24 조 제 2 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시지, 스마트폰앱 등) <input type="checkbox"/> 통지 생략(불원)		

- ③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 9 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제 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 10 조 (법적절차)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에 알맞는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2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 14 조 (신탁 기본보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신탁 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함)를 제 16조 제 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보수	<input type="checkbox"/> 선취 : 신탁금액 X ()%
	<input type="checkbox"/> 후취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 신탁기간(일수) ÷ 365 일(윤년은 366 일)

②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 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신탁원본이란 제 2 조 제 1 항의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 2 조 제 2 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 중 추가한 신탁금액은 신탁원본에 더한다.
2. 제 16 조에 의한 이익 계산 금액은 신탁원본에 더하거나 또는 뺀다.
3. 일부 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금액은 신탁원본에서 뺀다.

④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에 기본보수를 뺀 날부터 제 1 항에서 정한 기본보수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 1 항의 기본보수율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 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 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원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 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신탁원본 지급일 전일

③ 제 4 항의 기준지표란 신탁재산의 운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장지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④ 제 6 항의 수익보수를 산정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다.

기준지표: ()

⑤ 이하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을 뺀 나머지 금액
-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수익보수 계산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3.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직전 거래일에 장이 종료할 때의 기준지표 대비 해당 수익보수 계산일 직전 거래일에 장이 종료할 때의 기준지표 상승 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⑥ 수익보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연 ()% 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큰 경우

$$\text{수익보수} = \text{신탁원본} \times (\text{신탁수익률} - \text{기준지표수익률}) \times \text{수익보수율}(\quad)\%$$

2. 신탁수익률이 연 ()%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 16 조 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제 6 항의 수익보수율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하거나 뺀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월이 지난 날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5. 기타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로부터 제 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한다.

제 18 조 (중도해지) ①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명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____)일 이하인 경우 : 해지신탁원본의 (____)%
- 신탁계약일로부터(____)일 초과 (____)일 이하인 경우 : 해지신탁원본의 (____)%
- 신탁계약일로부터(____)일 초과한 경우 : 해지신탁원본의 (____)%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 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⑥ 제 3 조 제 2 항의 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 평균잔액} \times \text{연} 0.20\% \times \text{신탁기간(일수)} \div 365 \text{ 일(윤년은 366 일)}$

단,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의 신탁 기본보수율이 연 0.20% 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본보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③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원본이 지급될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 4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4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종료시점에 신탁재산의 처분 및 현금화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된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제 20 조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금전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1 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명한 후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일부 해지)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명한 후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 18조 제3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제 8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6 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원 본 수 익 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이 익 수 익 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 탁 자 주 소 :

성 명 : (주)신한은행 부(점)장 (인)

[별표 1]

신탁재산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 내지 21.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 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	8. 사채	15. ETF
2. 콜론, RP, 발행어음	9. 주식	16. ETN
3. 예치금	10. 양도성예금증서	17. 수익증권
4. 국 채	11. 전자단기사채	18. 그 밖의 증권
5. 통화안정증권	12. 기업어음	19.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6. 기타 금융채	13. 파생결합사채	2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7. 지방채	14. 파생결합증권	21. 그 밖의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금보장형에 한정됩니다.

[별표 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_____지점 앞

귀행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신탁 계약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계좌 번호 : _____

운용지시 내용 : 신탁재산 운용방법[별표 1]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부내용」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별표1 종류)	세부내용		
	종목	비중(%)	위험도 등급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위탁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인/서명)

<별첨>

1. 제 20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